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20선의 질답 사례로 배우는 기업 실무 가이드





# CONTENTS

## 들어가며: 인공지능기본법 사례집 활용 가이드

### PART 01

#### 1 제1장. 인공지능기본법 소개

1. 제정 취지
2. 주요 내용, 용어, 의무 조항 요약
6. 3. 의무 위반시 프로세스
7. 4. 참고 자료

### PART 02

#### 8 제2장.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조항별 설명

8. 1. 제2·4·5조 |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11. 2. 제31조 | 투명성 확보 의무
13. 3. 제32조 | 안전성 확보 의무
15. 4. 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17. 5. 제34조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
18. 6. 제36조 | 국내대리인 지정

###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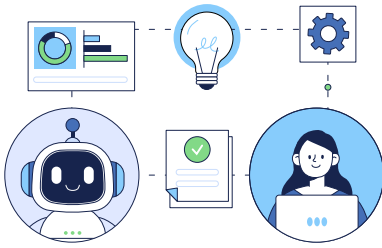
#### 21 제3장.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주요 문의 사항 및 답변

22. **유형1**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23. <사례 1> 타사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가?
23. <사례 2>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가??
24. <사례 3> 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20선의 질답 사례로 배우는 기업 실무 가이드]

- 25 <사례 4> 개인 창작자(유튜버, 인스타그램러 등)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 25 <사례 5> 내부 업무용으로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인가?
- 26 **유형2**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 27 <사례 6> 이미지 생성 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메타데이터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가?
- 28 <사례 7> 인공지능 챗봇·보이스봇 서비스에서 사전고지와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 29 <사례 8>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게시할 때 표시 방법은?
- 29 <사례 9> 인공지능이 생성하고 사람이 수정한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 30 <사례 10> 멀티 LLM 환경에서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 30 <사례 11> 광고영상·SNS 콘텐츠·인쇄물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은?
- 31 <사례 12>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31 <사례 13> 법 시행 전 제작하여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가?
- 32 **유형3**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판단
- 33 <사례 14>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33 <사례 15> 대출 신용 심사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 CONTENTS

### PART 03

- 34 <사례 16> 의료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35 <사례 17> 교육 인공지능서비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 35 <사례 18>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홍수예보·지능형 CCTV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36 [유형4] 그 밖의 공공증 - 운영 의무 및 집행
- 36 <사례 19>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기록·사후 검증 관리체계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37 <사례 20> 법 시행 이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은?

### 참고

- 37 [참고] 사례색인

### 부록

- 39 [부록1] 실무 판단 기준
- 39 [유형1] 책임 주체 및 적용 대상
- 47 [유형2]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 58 [유형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 66 [유형4] 운영 의무 및 집행
- 69 [부록2] 기타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대응 안내
- 71 [부록3]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
- 75 [부록4]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전문 (2026.2. 기준)

표  
목차

- 1 표1.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현황
- 2 표2.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주요 취지
- 2 표3.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비교
- 5 표4.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용어
- 6 표5. 인공지능기본법 의무 조항 요약
- 10 표6.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 비교
- 11 표7. 투명성 확보 의무 발생 요건
- 12 표8.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방법
- 13 표9. 안전성 확보 의무 구조 요약
- 15 표10.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 구조 요약
- 16 표11.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요소
- 17 표12.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 의무 구조 요약
- 18 표1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조 요약
- 21 표14.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문의 현황(2026.3.21. 기준)
- 26 표15. 투명성 의무 이행 수단 비교표
- 32 표16. 고영향 인공지능 업종별 판단 요약표
- 38 표17. 사례별 관련 조항 및 유형

그림  
목차

- 7 그림1. 의무 위반시 주요 프로세스
- 7 그림2.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 22 그림3. 사례집에서 원하는 사례 찾는 방법
- 26 그림4. 투명성 확보 의무 기본 원칙 적용 흐름도

---

## ○ 들어가며: 인공지능기본법 사례집 활용 가이드

---

법이 시행된 날, 현장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정식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당일부터 기업 법무팀, 서비스 기획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궁금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 입니까?”  
“워터마크는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합니까?”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어떻게 압니까?”

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총 513건의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2026. 3. 21. 기준, 유선 문의 243건, 온라인 문의 270건).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 이 사례집을 만든 이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질문들을 보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조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의자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법 조문은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사례와 법 조문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본 사례집은 바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주요 문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사례집에 필요한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 이 사례집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조항 중심이 아닌 현장 질문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순서, 즉 “나는 의무 주체인가? → 어떻게 이행하는가? → 우리 서비스가 해당되는가? → 운영 중 생기는 쟁점은 무엇인가?”의 흐름으로 사례를 배열했습니다. 조항 중심이 아닌 지금 당장 판단이 필요한 분을 위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기업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현장 사실관계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수록된 사례는 실제 접수된 문의를 바탕으로 하되, 문의 기관과 기업 정보는 익명화·각색했습니다. 그러나 독자가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핵심 구조는 최대한 포함했습니다.

셋째, 결론만이 아닌 판단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 사례는 단순히 “의무 있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를 어떻게 따져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경계에 있는 사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실무 판단 기준(부록1)’은 이 과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재구성하여 자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사례집 활용 방법

제2장에서 관련 조항의 원칙·예외·용어 정의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본인의 상황이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고릅니다.

- 유형1 (사례 01~05) - 인공지능을 활용·제공할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할 때
- 유형2 (사례 06~13) - 표시 의무 등 실무에서 “어떻게” 법을 지킬지 궁금할 때
- 유형3 (사례 14~18) - 본인 서비스가 기본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할 때
- 유형4 (사례 19~20) - 실무적인 “운영 쟁점”이 궁금할 때

제3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읽고 핵심 갈림길(이용자 상호작용 제공 여부, 사전 고지 시점, 표시 수단, 인간 개입 수준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주의사항

본 사례집에 수록된 답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례의 법적 판단은 실제 상황(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약관, 기능 변경 수준, 의사결정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유권해석이 아닌 실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소개

## 1. 제정 취지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기획자도, 법무 담당자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인공지능 없이 일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내 정보를 어떻게 쓰는 걸까?’, ‘이 인공지능 생성물을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도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U는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법체계를 제정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을 시행하며, 정부의 조사·지도 권한 아래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율적 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각자의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 표1.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현황 〉

| 구분  | 주요 내용  |
|---|--|
|  EU AI Act<br>(‘24.1월 제정, ‘26.8월 시행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괄적 인공지능 법체계로, 인공지능의 위험을 기준으로 차등 규제를 적용</li> <li>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선도</li> </ul>       |
|  日 AI촉진법<br>(‘25.6월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연구개발, 이용의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흥법 마련</li> <li>연성 규제체계로, 정부는 조사·지도 권한을 갖고, 기업은 협력의무 부담</li> </ul>    |
|  美 AI위험관리 프레임워크<br>(‘23.1월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개발·배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체계적 관리</li> <li>“인공지능 혁신은 촉진, 위험은 최소화” 원칙 아래 자율적 규범 제시</li> </ul>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년여 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2024년 12월 국회 통과, 2026년 1월 시행). 이 법은 국내 인공지능

1 EU AI Act는 ‘26.8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나,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 유예 연장(AI 활용 기반 고위험 AI는 ‘27.12.2, AI 제품 기반 고위험 AI는 ‘28.8.2) 및 ‘26.8.2. 출시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경과규정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협상이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진행 중으로 ‘26.8. 시행 전 개정안 통과가 예상됨

능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낸 법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합니다.

〈 표2.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주요 취지 〉

| 국가인공지능정책 거버넌스 확립  |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 안전신뢰 기반 조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도입·활용 전 영역에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기능,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 설치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R&amp;D 지원, 기술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법제도 개선</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윤리원칙, 민간자율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설치</li> <li>· 안전·신뢰 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사업자 책임,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li> </ul> |

## 2. 주요 내용, 용어, 의무 조항 요약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전문은 [부록4]를 참고하십시오.

〈 표3.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비교 〉

| 법률 규정 사항 [시행 2026. 1. 22.]<br>[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시행령 규정 사항 [시행 2026. 1. 22.]<br>[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
|--|---|
| <b>제1장 총칙</b>  |   |
| 제1조(목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제1조(목적) 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제2조(정의) 법의 주요 용어 정의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에서 제외되는 국방·국가안보 목적 업무의 범위 규정                |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법의 기본 원칙 규정   |   |
| 제4조(적용범위) 법의 적용 범위 규정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
| <b>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b>   |   |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3년) 수립 의무 및 포함 내용 등 규정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이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 등 규정                  |

|   |  |
|---|--|
| 제7조~제9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권한, 위원회 구성, 지원단 설치 등 규정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운영 등 규정                   |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필요시 외부 협조, 연구 의뢰, 여론 수렴 등 가능                |
|   |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지원단 구성, 기능, 인력 총원 방법 등 규정            |
|   |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위원회 개선권고에 대한 후속 절차 등 규정                    |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내 분과·특별위원회, 자문단 설치·운영 등 가능                                | 제8조(분과위원회 등) 분과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구성 방법 등 규정         |
|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 개발, 국제규범 정립·확산 업무수행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가능               |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등) 지정 대상 기관·단체 등 규정                     |
|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안전 정책·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가능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안전연구소 수행 사업 등 규정                   |
| <b>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b>  |  |
|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R&D 사업 지원, 안전기술 개발·보급 지원 등 가능                  |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규정 |
|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 가능         |  |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학습용데이터 생산·관리·유통·활용 시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등 | 제12조(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 사업 선정 기준 등 규정    |
|   |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운영 의무        |
|   | 제14조(비용의 징수) 통합제공시스템 이용자 대상 비용 징수, 이용료 감면 가능             |
|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정부 및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의무 등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AI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등 규정       |
| 제17조(중소기업 등을 특별지원) 정부의 지원시책 시행시 중소기업 우선 고려 등  |  |
| 제18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 등 추진 가능  |  |
|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 의무 등                        |  |
| 제20조(제도개선 등)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의무 등                                   |  |

|   |   |
|---|---|
|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 가능 등                      |   |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의 국제협력 추진 의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업무 위탁·대행 가능 등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위탁·대행 기관·단체 선정 기준, 절차 등 규정                           |
|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정부는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등                     |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집적단지 지정 기준, 지정 절차시 고려사항 등 규정                                |
|   |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집적단지 전담기관 설치 및 지정 가능  |
|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운영 개방 가능 등               |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등의 조성) 실증기반 개방 제공 기관 규정 및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가능                 |
|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정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 등        |   |
|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방법 및 기능 등                      |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 한국 인공지능진흥협회 설립 절차, 정관 변경 필요 사항 등 규정                 |
| <b>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b>  |   |
|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표 가능 등                                    |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 가능 |
|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연구기관이나 인공지능사업자도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가능 등               |   |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등               |   |
|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자율 검·인증 활동 지원, 중소기업등의 검·인증 수검 지원 가능 등 |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검·인증 관련 지원사항,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항 등 규정                    |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의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관련 공개 의무 등                  |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방법, 투명성 의무 예외 등 규정                           |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의 최첨단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전반 위험식별, 모니터링 의무 등               |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대상 인공지능시스템 기준 등 규정                                  |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의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 방법 등            |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판단 기준 등 규정                              |
|   |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                        |

|   |   |
|---|---|
|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등                   |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이행 관련 문서 보관, 홈페이지 게시 등 의무 및 예외사항 규정 |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향 평가 실시 및 국가기관의 영향 평가 제품 서비스 우선적 고려 권고 등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영향평가지 포함 사항, 실시 방법 등 규정                     |
|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의무 등                              |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 사업자 이용자수 등 상세 기준 등 규정        |
| <b>제5장 보칙</b>   |   |
|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국가의 재원 확충 의무 등                                      |   |
|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관련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공표 의무 등              |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 방법 등 규정  |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정부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권한 위임·위탁 가능 등                               | 제31조(업무의 위탁) 위탁 대상 업무 및 업무 위탁 근거 등 규정                           |
| 제40조(사실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규정 가능 등                           |   |
| 제43조(과태료) 투명성 의무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규정                                 |
| [부칙] 시행일 등  | [부칙] 시행일 등  |

〈 표4.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용어 〉

| 용어       | 의미  |
|----------|---|
| 인공지능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 인공지능시스템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인공지능 생성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
| 인공지능기술   |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  |
| 인공지능제품   |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제품   |
| 인공지능서비스  |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서비스  |
|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생성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
| 인공지능사업자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개인, 기업 및 기관 모두 포함되며,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포괄하는 의미)                      |

|           |   |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예: EXAONE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LG AI 연구원, 네이버 클로바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에이닷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SKT, ChatGPT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OpenAI 등)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등)   |
| 이용자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개인, 기업 및 기관 모두 포함)   |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채용·대출심사·의료·교육평가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 해당 가능  |
| 영향받자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

〈 표5. 인공지능기본법 의무 조항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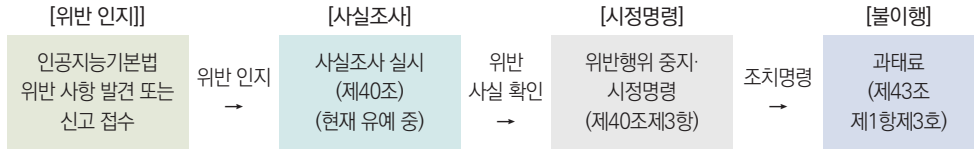
| 조항   | 의무 내용        | 주요 내용  |
|------|--------------|--|
| 제31조 | 투명성 확보 의무    |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 사전고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등)        |
| 제32조 | 안전성 확보 의무    | 최첨단 인공지능 대상 위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이행 결과 제출 |
| 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 검토                 |
| 제34조 | 사업자 책무       |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이용사업자의 기록 보관, 설명 가능성, 사후 검증 체계 구축          |
| 제36조 | 국내대리인 지정     |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

### 3. 의무 위반시 프로세스

인공지능기본법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기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특정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라는 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후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 고지 미이행, ■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 인공지능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해 사실조사가 유예됩니다. 법 적용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의 속도, 글로벌 규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림1. 의무 위반시 주요 프로세스 〉



**! 주의사항** 모든 경우에 사실조사가 유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인명사고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니, 법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 그림2.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



##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조항별 설명

이 장은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조항별로 ①의무 구조 요약, ②자주 묻는 질문(FAQ), ③제3장 관련 사례 연결로 구성됩니다. 본 사례집의 제3장 인공지능 지원데스크 주요 문의 사항 및 답변보다 이 장을 먼저 읽으신다면 기본법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3장을 먼저 읽으셨다면 조항별 기준을 빠르게 재확인하는 색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장 사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부록1. 실무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제2·4·5조 |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시행일: 2026. 1. 24.]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4·5조의 의무 구조 요약

인공지능기본법의 모든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동일한 기업이라도 서비스 단위로 사업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 궁금증: “개인”도 포함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개인, 국가기관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라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됩니다. 국가기관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 표6.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 비교 〉

| 구분    |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 이용자                           |
|-------|------------------------------|---------------------------------|-------------------------------|
| 정의    |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자 | 타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기업·기관 |
| 의무 부담 | ○ (제31·32·33·34·36조)         |                                 | X (의무 없음)                     |

### 📖 자주 묻는 질문

- Q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A 인공지능의 구조 설계에 직접 관여하고 개발 전반을 통제하면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요구 사양을 제시하고 개발을 외주에 맡긴 경우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외주로 개발하더라도 발주사가 구조 설계에 관여하거나 실질 통제하거나 개발사가 납품한 시스템을 발주사가 중대하게 변경했다면 발주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인공지능사업자 지위는 서비스 단위로 판단합니까, 기업 단위로 판단합니까?
- A 원칙적으로 서비스(또는 제품)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서비스별로 사업자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Q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기관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까?
- A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도 민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에 사용할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드는 기업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까?
- A 생성형 인공지능을 콘텐츠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 2. 제31조 |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무 구조 요약

①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②생성형 인공지능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성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는 별개 의무입니다.

### (1) 의무 발생 요건

〈 표7. 투명성 확보 의무 발생 요건 〉

| 구분                                  | 사전고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 근거 조항            |
|-------------------------------------|----------|-------------|------------------|
| 인공지능사업자                             | ○        | ○           | 제31조 제1·2항       |
| 이용자(개인·기업)                          | X        | X           | 해당 없음            |
| 내부 업무 전용 인공지능                       | X        | X           |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 |
| 법 시행(2026.1.22.) 이전 생성·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 | X(해당 없음) | X(소급 없음)    | 부칙(적용 시기)        |

## (2) 허용되는 표시 방법

별도의 법정 표준 서식은 없으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8.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방법 〉

| 표시 유형   | 허용 방법   |
|---------|---|
| 가시적 표시  | 워터마크, 자막, 화면 안내 문구 등  |
| 비가시적 표시 | 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워터마킹 등 (비가시적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을 별도 제공해야 함) |

### 📖 자주 묻는 질문

- Q 사전고지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사전고지는 서비스 이용 전 인공지능 운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에 해당 생성물을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Q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까?

A 딥페이크 관련 표시 의무도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이미지·영상의 경우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인공지능 생성물에 일부 사람이 후처리한 생성물(배경 합성, 리터칭 등)도 표시 대상입니까?

A 이용자가 생성물을 수정하는 경우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물의 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Q 법 시행 전에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소급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합니까?

A 소급 적용 없음이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이전에 이미 생성하여 제공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삭제·재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행 이후 새롭게 생성하는 인공지능 생성물부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 3. 제32조 |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32조의 의무 구조 요약

법 제32조는 고성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및 안전 기술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제31조(투명성)·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이며, 고성능 인공지능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의무 대상입니다.

〈 표9. 안전성 확보 의무 구조 요약 〉<sup>2</sup>

| 항목    | 내용   |
|-------|--|
| 의무 대상 | 시행령 제24조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기존 인공지능에 실질적 변경을 가해 그 기준에 해당하게 한 인공지능사업자 |
| 주요 내용 | 최첨단 인공지능 대상 위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이행 결과 제출                                 |
| 관련 조항 | 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

2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자주 묻는 질문

- Q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른 '인공지능 위험 관리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법 제32조는 고성능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요소 식별 및 평가, 문서화, ②오남용·의도치 않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위험 완화조치의 수립 및 시행, ③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 포함됩니다. 다만 조치의 구체적 수준과 방법은 해당 인공지능의 용도·규모·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하는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Q 법 제32조 안전성 의무와 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나요?
- A 두 조항은 의무 발생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법 제32조는 고성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이고, 법 제34조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책무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최첨단 인공지능인 동시에 고영향 인공지능에도 해당하면 두 조항의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모니터링·기록 체계가 법 제34조의 사후 검증 체계와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으므로, 두 의무를 함께 설계하면 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고성능 인공지능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고성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①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 ③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사 인공지능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거나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3조 의무 구조 요약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제34조의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가 부과된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확인 결과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는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1)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영역 및 판단 기준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영역은 법령에 열거된 분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분야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법령은 [부록3]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10.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 구조 요약 〉<sup>3</sup>

| 분야   | 인공지능시스템 활용                           | 비고   |
|------|--------------------------------------|--|
| 채용   | 합격·탈락 결정에 인공지능이 직접 관여                | 기초 자료 작성 보조만 하고 사람이 평가하면 제외 가능 (사례 14)                                 |
| 대출심사 | 대출 승인·거절·조건을 인공지능이 직접 결정             | 인공지능 생성물을 단순 참고하고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면 제외 가능 (사례 15)                           |
| 보건의료 | 진단·치료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 의료진의 독립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가능.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기준 검토 필요 (사례 16) |
| 교육평가 |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목적 인공지능에 한정 | 학습 보조·콘텐츠 생성·학원 교육 목적은 제외 (사례 17)                                      |
| 에너지  | 에너지 공급 분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인공지능            | 인공지능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 등으로 전력 등 에너지 공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 초래(사례 18)   |

3 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상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2)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요소

아래 두 가지 요소를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표11.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요소 〉

| 판단 요소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가능   |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
|-------------|---|--|
| ① 법정 영역     |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영역(예: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원자력, 범죄수사·체포 생체인식, 채용·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평가 등) | 법정 영역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 아님       |
| ② 중대한 위험 초래 | 사람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 통제권이 보장된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가능(예외 있음) |

### 📖 자주 묻는 질문

- Q 고영향 인공지능 사전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의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Q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까?
- A 현재 법령상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결과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에 따라 법 제34조의 사업자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 고영향 인공지능이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했는데 이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 A 자체 판단 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 검토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하면 향후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가 복수의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동시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 A 해당하는 복수 영역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러 영역에 걸치는 경우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책무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제34조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 ● 제34조 의무 구조 요약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경우,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각각에 책무가 부과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발·이용 태그'로 이행 주체를 구분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표12.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 의무 구조 요약 〉

| 책무 항목            | 이행 내용   |
|------------------|---|
|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정책과 조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
|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와 이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주요 판단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
|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설계, 시험·평가,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 과정 전반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    |
| 사람의 관리·감독        | 시스템의 오류나 성능 저하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즉각적으로 통제 및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문서의 작성과 보관       |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위 조치들의 내용과 이행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뢰문서'를 작성하고 보관                |

### 📖 자주 묻는 질문

- Q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책무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다시 이행해야 하나?
- A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행한 책무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sup>4</sup>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중복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 또는 SLA<sup>5</sup>를 통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이행 내용은 어디에 공시합니까?

A 법 제34조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의 정보 제공은 홈페이지 등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공개 범위와 방식은 인공지능시스템 특성, 보안·영업 비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위치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내용을 가급적 개별 인공지능시스템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인공지능 판단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A 가이드라인에서는 입력·출력·근거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로그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이 별도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로그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6. 제36조 | 국내 대리인 지정

### • 의무 구조 요약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표1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조 요약 〉

| 항목       | 내용  |
|----------|---|
| 의무 대상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지정·신고 기한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름(세부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가이드라인 확인)      |

4 '중대한 기능 변경'이란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준으로 성능, 안전성(위험성), 용도(목적), 이용 분야와 맥락, 신뢰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인공지능 지원데스크 사이트에 등록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시오.

5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에 서비스 품질, 목표, 측정 방식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명시한 계약을 말합니다.

|          |  |
|----------|--|
| 역할       |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문서 최신성·정확성 점검 포함) |
| 국내대리인 요건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

## 📖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 인공지능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습니까?
- A 해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②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③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④인공지능기본법 위반(사실조사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 Q 국내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 A 법령상 국내대리인의 자격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법 제36조제2항),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지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 Q 국내대리인 지정 전에 이미 해외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 A 법 시행 전부터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해외 사업자도 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국내에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있는 해외 기업도 별도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까?
- A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법적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국내대리인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내 법인이 단순 마케팅이나 지원 업무에 국한되어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국내대리인 지정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Q 국내대리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A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리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 이행 및 주무부처와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하면, 안전성 의무 이행 결과 제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신청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6조제3항).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주요 문의 사항 및 답변

이 장과 앞의 제2장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제2장이 각 조항의 의무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리한 참조 자료라면, 이 장은 실제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바탕으로 그 기준이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모음입니다.

제2장을 먼저 읽으셨다면 조항별 원칙을 염두에 두고 사례를 읽으면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먼저 펼치셨다면 사례를 읽은 뒤 관련 조항을 제2장에서 찾아보면 판단 근거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에서 자사 서비스의 의무 여부를 더 깊이 점검하고 싶다면 [부록1. 실무 판단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이 장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 1. 22.) 이후 두 달간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된 270건의 온라인 문의(2026. 3. 21. 기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지원데스크를 운영하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14.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문의 현황(2026.3.21. 기준) 〉

| 구분   | 비율            |
|--|---------------|
| 제31조 투명성 확보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사전고지 방법 등)      | 142건 (52.59%) |
|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              | 51건 (18.89%)  |
| 기타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하위법령 등) | 77건 (28.52%)  |
| 합 계  | 270건 (100%)   |

조항이 아닌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실제 현장의 고민은 단순히 개별 조항의 내용을 넘어 ‘내가 누구인지(의무 주체 여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지’, ‘서비스의 구조가 어떤지’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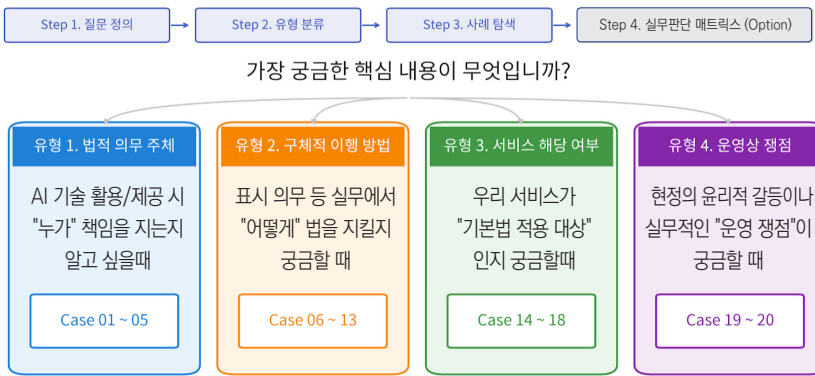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질문 순서에 따라 사례를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상담 내역 중 반복되는 핵심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 중 대표성이 높은 20건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조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과 사례를 통해

‘누가 의무를 지는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이행하는가’, ‘우리 서비스가 해당 법령의 대상인가’, 그리고 ‘운영상 발생하는 쟁점은 무엇인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제2장의 FAQ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주 접수된 질문은 사례화 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사례 찾기 4단계]**

- Step 1. 질문 정의** -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Step 2. 유형 분류** - 아래 4가지 유형 중 본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릅니다.
- Step 3. 사례 탐색** - 해당 유형의 사례 번호를 찾아 Q&A와 핵심포인트를 읽습니다.
- Step 4. 매트릭스 활용(선택)**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부록1. 실무 판단 기준]의 동일 사례 번호에서 체크리스트와 경계사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그림3. 사례집에서 원하는 사례 찾는 방법 〉



※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의자 관련 정보는 일부·수정 각색하였습니다.

**유형 01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인공지능기본법의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업자이고 누가 단순 이용자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용자’와,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례 01** 타사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제2·4·5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Q** 우리 회사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운영하며,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ChatGPT·Gemini 등)로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고 검수한 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한 향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예: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기' 형태의 생성 응답 기능)을 일부라도 제공하면 그 기능 범위에서 지위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 A**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ChatGPT, Gemini 등)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문의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며, 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예: 인공지능 챗봇)를 제공하게 되면, 그 기능 범위에서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이용자, 후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02**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인데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하여 내부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인 우리 회사도 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사전고지, 표시)를 이행해야 합니까?
- A**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이용자에는 공공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인공지능제품, 서비스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가'가 기준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여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고, 인공지능서비스를 외부기관에서 제공받아 이용한다면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해 산출물을 만드는 주체'는 이용자이고,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03** 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제2·4·5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Q 우리 회사는 타사와 인공지능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타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에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이용자에 해당합니까?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 A 인공지능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주사가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조 설계 관여하거나, 실질 통제하거나, 개발사가 납품한 시스템을 중대하게 변경했다면 발주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외주 여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①구조 설계 관여 및 실질 통제 여부, ②중대한 변경 여부입니다. 인공지능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이며, 발주사가 설계를 실질 통제했거나 납품 후 기능·용도·성능이 현저히 달라질 정도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RAG(검색·증강·생성<sup>6</sup>) 연계나 사내 기술 용어집 추가만으로는 '중대한 기능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 여부는 기능·용도·성능이 현저히 달라졌는지, 데이터의 양·질이 기존 인공지능과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RAG는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할 때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기업 내부 문서 등)를 먼저 검색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기술임. 인공지능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 현상(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줄이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례 04** 개인 창작자(유튜버, 인스타그램머 등)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개인 창작자가 타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로 만든 표지·삽화·홍보 이미지를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됩니까? 또한 플랫폼 수익 정산을 받으면 인공지능사업자로 보아 의무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가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A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개인 창작자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인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제품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공지능서비스로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물(콘텐츠)을 인공지능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핵심 포인트**

판단 기준은 수익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가입니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물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창작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05** 내부 업무용으로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외부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내부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의무가 적용됩니까?
- A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고지 의무 및 표시 의무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공지능서비스가 제3자에게 제공되면(무상·유상 무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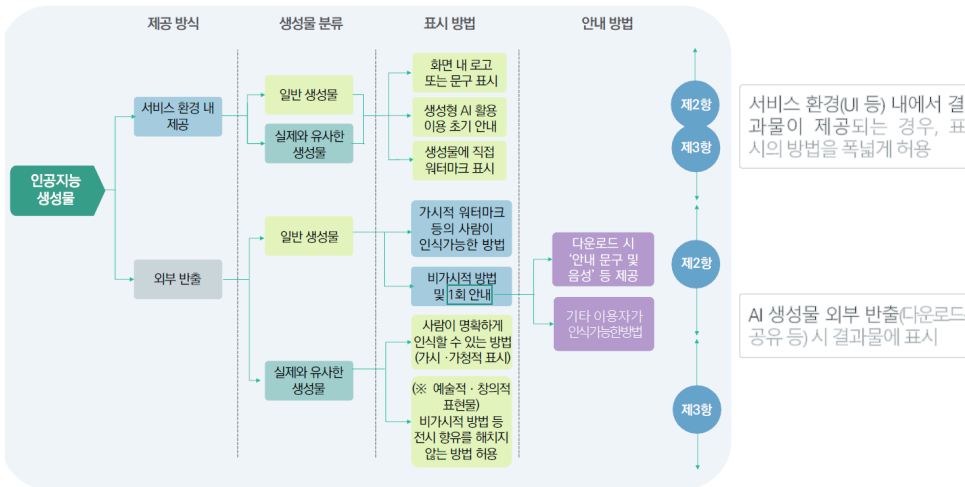
## 🔍 핵심 포인트

내부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유형 02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전체 문의의 56%를 차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표시 방법·위치·수준 등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의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자막, 메타데이터 등)에서 '방법·수단·수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고지와 표시의 기본 원칙과 흐름은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십시오.

〈그림4. 투명성 확보 의무 기본 원칙 적용 흐름도〉



〈표15. 투명성 의무 이행 수단 비교표〉

| 의무 구분                  | 제공 상황                            | 이행 방법   | 관련 사례    |
|------------------------|----------------------------------|---|----------|
| 사전고지<br>법 제31<br>조 제1항 |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이용 전 | 서비스명·앱 설치 안내·이용약관·첫 화면 문구·음성 안내 등 다양한 방법 허용<br>이용자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됨을 인지할 수 있으면 충족. 매번 반복 고지 불필요 | 사례<br>07 |
|                        | 예외:<br>내부 업무 전용 인공지능             |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고지 의무 적용 제외  | 사례<br>05 |

|                         |                               |  |                           |
|-------------------------|-------------------------------|--|---------------------------|
| 표시 의무<br>법 제31<br>조 제2항 | 서비스 환경(UI 등) 내에서만 인공지능 생성물 제공 | 텍스트·이미지 생성물: 화면 내 로고·문구·워터마크 등<br>음성 생성물: 재생 초기 음성 안내<br>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 가능하면 개별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반복 삽입 불필요  | 사례<br>06,<br>07,10,<br>11 |
|                         |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이 있는 경우        | 인공지능 생성물(파일)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br>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워터마크 등 방법은 자유.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족. 비가시적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을 별도 제공해야 함. | 사례<br>06, 07              |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 (딥페이크 수준)    | 원칙: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가청적 표시<br>예외: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감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가시적 방법(메타데이터 삽입 등) 또는 별도 영역 표시로 대체 가능  | 사례<br>06, 12              |

※ 법정 표준 서식 없음. 어떤 방법이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족 (시행령 제23조 제2항). 모델명 명시는 법적 의무가 아님 (→ 사례 10)

**사례 06** 이미지 생성 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메타데이터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까? 서비스 내에서만 보여주는 경우와 다운로드·공유(외부 반출) 하는 경우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까?
- A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제공 형태에 따라 이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환경(UI, 앱 화면 등) 안에서만 인공지능 생성물이 제공되는 경우, 이용 전 안내나 서비스 화면의 로고·문구 표시 등으로 이용자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개별 이미지마다 워터마크를 반복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할 때는, 인공지능 생성물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성물(파일) 안에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워터마크 등). 단, 비가시적 방법을 이용할 때는 다운로드 시점에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영상·음성(소위 딥페이크 수준)에 해당하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가청적 표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비가시적 표시나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 자막 등)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표시 방법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워터마크·자막·메타데이터·이용약관 명시·화면 안내 문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됩니다. 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 07 인공지능 챗봇·보이스봇 서비스에서 사전고지와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Q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챗봇·보이스 응답 서비스에서 사전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서비스명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용자가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때도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요?

A 사전고지 의무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명, 앱 설치 시 안내, 이용약관, 첫 화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매번 개별 알림이나 메시지로 반복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는 서비스 이용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대화 응답이라면 UI 내 로고·문구 표시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음성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등 외부 반출 기능이 있으면 그 인공지능 생성물 자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음성 인공지능 생성물을 외부로 제공할 때는 음성 시작 시 안내 등 가시·청각적 표시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서비스명·화면 문구·표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명 하나만으로는 이 명백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공 방식의 특성상 사전고지나 표시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예외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외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핵심 포인트

챗봇·보이스봇은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 작용하는 전형적인 인공지능서비스입니다. 사전고지는 서비스 이용 시작 전 또는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08**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게시할 때 표시 방법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배경을 합성·생성하거나 보정한 경우,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 사용' 표기를 해야 합니까? 표기한다면 위치/크기 기준이 있습니까?
- A**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드는 경우는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다는 표시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워터마크의 표시 위치나 크기에 관해 법령이 정한 규격은 없고, 만약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라면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Q** 핵심 포인트

온라인 커머스가 인공지능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예: 소비자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마케팅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대체로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사례 09** 인공지능이 만들고 사람이 수정한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공지능 생성물을 사람이 일부 수정하면 투명성 표시 의무가 달라지나요?
- A** 타사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청첩장 등에 단순히 삽입하는 방식(다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없음)이라면 이용자에 해당하여 표시 의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공지능 생성물을 타 인공지능과 연동하여 콘텐츠를 수정·생성하는 인공지능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터칭의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공받은 뒤, 별도로 편집하는 이용자는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 내 기능의 일부로 리터칭(추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최종 인공지능 생성물을 출력하는 구조라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 핵심 포인트

인공지능 생성물을 사람이 단순히 수정하는 등 보조 역할만 한 경우(예: 단순 색보정)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자동화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0 멀티 LLM 환경에서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이용자가 인공지능서비스에서 GPT 계열, Gemini 등 여러 LLM 중 하나를 선택해 인공지능 생성물을 생성하는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 하단 등에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생성물'과 같은 포괄적 표시만으로 제31조 의무 이행이 가능한지요.
- A 현행 인공지능기본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표시 의무 이행 시 구체적인 모델명(예: GPT-4o)까지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또는 '인공지능 생성물' 등의 포괄적 표현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신뢰와 선택권,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모델명 또는 사용 엔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공할 때는 서비스 화면이나 정책 페이지 등에서 일관되게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핵심 포인트

법상 의무사항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다만 모델명 명시는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례 11 광고영상·SNS 콘텐츠·인쇄물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광고영상·SNS 콘텐츠·인쇄물 제작 등을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들어 사용하면 표시 의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든 장면이나 이미지마다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게시글 설명 텍스트나 인쇄물의 별도 표기(안내문)로도 가능한지요.
- A 단순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광고용 이미지·영상 등의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경우는 '이용자'에 해당하여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서비스

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라면 표시 의무가 발생하며, 표시 방식은 콘텐츠 특성과 제공 방식에 따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 자막 등)나 서비스 화면의 로고·문구 표시 등도 허용됩니다. 또한 워터마크의 위치/크기 등 정형 규격은 없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Q 핵심 포인트**

광고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이용자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표시의무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표시면 됩니다.

**사례 12**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전시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창의적 인공지능 생성물에서는 워터마크가 감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시적 표시(워터마크)가 필수인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비가시적 방법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한지요?
- A 인공지능기본법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 비가시적 방법 등을 통해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는 ①생성물의 주요 콘텐츠와 겹치지 않는 별도의 영역에 표시하는 방법(엔딩크레딧, 자막 등), ②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시적 방법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 안내 문구·음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핵심 포인트**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는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의 표시가 허용됩니다. 엔딩크레딧, 자막 등 별도 영역 표시 또는 비가시적 표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13** 법 시행 전 제작하여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Q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1.22.) 이전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여 SNS·유튜브 등에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하는지요? 수정이 어려우면

삭제·재업로드가 필요합니까?

- A 인공지능기본법은 법 시행 이후 생성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생성하여 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삭제·재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핵심 포인트**

소급 적용 없음이 원칙입니다. 시행 이전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형 03**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법 제34조의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업종별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많습니다. 개발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인공지능이 법에서 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다룹니다.

〈 표16. 고영향 인공지능 업종별 판단 요약표 〉<sup>7)</sup>

| 업종               | 법정 영역 해당 | 고영향 인공지능 가능성 | 적극적·실질적 개입·통제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
|------------------|----------|--------------|----------------------|-------|
| 채용 (합격·탈락 결정)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사례 14 |
| 채용 (서류 요약·추출 보조)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사례 14 |
| 대출심사 (승인·거절 조건)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사례 15 |
| 대출심사 (단순 참고자료)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사례 15 |
| 의료·기기 (진단·치료)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사례 16 |
| 의료·기기 (편의성 보조)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사례 16 |
| 교육 (학생 평가)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사례 17 |
| 교육 (학습 보조·생성)    | X        | 영역 비해당       | -                    | 사례 17 |
| 교육 (특수교육·리포트)    | X        | 영역 비해당       | -                    | 사례 17 |
| 재난·홍수예보 (수위 예측)  | X        | 영역 비해당       | -                    | 사례 18 |

7 ① 법정 영역 해당(O)된다고 해도 사람의 적극적·실질적 개입과 통제가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법정 영역 비해당(X)인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적극적·실질적 개입과 통제"는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판단과 결정을 배제,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의료분야와 금융분야는 인공지능기본법 이외에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준을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지능형 CCTV (단순 관제) | X | 영역 비해당                           | -     | 사례 18 |
| 지능형 CCTV (생체인식)  | △ | 가능성 있음<br>(범죄수사·체포에 활용<br>되는 경우) | 개별 판단 | 사례 18 |

**사례 14**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Q**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을 요약·추출·유사도 검사 등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고, 평가/선별은 사람이 수행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합니까? 또한 타 사업자의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해 이용하면 우리 기관은 사업자인가요?
- A** 채용 분야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고영향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원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문의 사안처럼 인공지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서류 검토·추출·요약·분류 또는 기초 자료 작성에만 활용되며, 최종 선별과 평가는 사람이 수행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사 채용 업무에만 활용하고, 이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Q** 핵심 포인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핵심: ①인공지능 활용 영역(채용 등 법정 영역인지) + ②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사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보장되는지) 등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례 15** 대출·신용 심사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Q**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조건 판단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어떤 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봐야 합니까?
- A**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단일 요건 충족만으로 일률 확정하기보다, 위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는 때는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결과값을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정(승인 여부·대출 조건)을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대출 분야는 잠재적으로 고영향 영역이지만, 인공지능이 승인/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지, 사람이 실질 통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정보와 종합 분석 후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사례 16 의료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Q 진단용 초음파 의료기기에 탑재되어 병을 탐지하고 의사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의사의 독립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참고 보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영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A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은 ①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용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②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기능은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특정 수치의 예측값을 제공해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예측값이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최종 임상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며 오류 시 의료진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의료진의 진단을 대체하거나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는 기능으로 보기 어려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작동 방식·의료행위 영향이 달라지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의료 영역이라도 “자동 진단/결정”인지 “편의성·보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최종 판단 주체와 오류 시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례 17** 교육 인공지능서비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Q 중·고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학습 콘텐츠 초안 생성·활동 기록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합니다. 문의 서비스는 학습 콘텐츠 초안 생성, 학습 활동 정리, 교사·보호자 참고용 리포트 작성 등 교육자료 생성과 교육과정 진행·정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평가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핵심 포인트**

교육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은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목적(성취도 평가, 합격·불합격 결정 등)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학습 보조·콘텐츠 생성·행정 지원 목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18**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홍수예보·지능형 CCTV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Q 인공지능이 10분마다 하천 수위를 자동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생성하며, 홍수 예보관이 검증 후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구조의 홍수예보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또한 스마트 CCTV 등 지능형 감시 기기에서 단순 모니터링 지원인지, 특정인 식별(생체 인식) 등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A 고영향 인공지능은 ①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②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홍수예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또는 먹는 물의 생산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홍수예보 체계에서만 활용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스마트 CCTV 등 지능형 감시 기기가 단순 모니터링 지원인지, 특정인의 식별(생체 인식) 등의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열거한 법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영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고영향 인공지능은 '영역 요건'과 '중대 영향 또는 위험' 요건 등을 함께 보는 2단계 판단 대상입니다. 홍수예보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은 현행 법령상 고영향 인공지능 법정 영역(에너지·먹는 물 생산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형 04 그 밖의 공금증 - 운영 의무 및 집행

소급 적용, 유예기간 운영, 기록·사후검증 체계 구축 등 제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실무 질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사례 19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기록·사후 검증 관리체계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34조 사업자 책무)

- Q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기록 보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후 검증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요? 특히 인공지능 판단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담보해야 합니까?
- A 법 제34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각각에 배정된 자가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이행 주체를 구분합니다. 기록 보관은 인공지능 판단 시점의 입력·출력·근거를 로그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합니다. 설명 가능성 확보는 개별 결정 단위로 이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시스템 수준의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은 정기적 성능 점검, 오류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행한 책무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중복하여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핵심 포인트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는 가이드라인에서 '개발이용 태그'로 구체적으로 이행 주체를 구분합니다. 홈페이지 공시 위치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은 가급적 개별 인공지능시스템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20** 법 시행 이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은?

**Q** 법 시행 이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에도 시행 후 의무가 적용되니까? 시행 전에 생성·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니까?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 등 제재와 유예기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법 시행 전부터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도 법 시행 이후부터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 전 생성되거나 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의무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단계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핵심 포인트

법 시행 후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실조사와 과태료는 현재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계적 이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준비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례색인**

제3장의 20개 사례와 관련 조항을 인공지능기본법 각 조항 기준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부록1. 실무 판단 기준]도 동일합니다.

〈 표17. 사례별 관련 조항 및 유형 〉

| 번호    | 질문   | 관련 조항   | 유형                   |
|-------|--|---------|----------------------|
| 사례 01 | 타사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제2·4·5조 | 유형1.<br>책임주체 및 적용 대상 |
| 사례 02 |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가?   | 제31조    |                      |
| 사례 03 | 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 제2·4·5조 |                      |
| 사례 04 | 개인 창작자(유튜버, 인스타그램머 등)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 제31조    |                      |
| 사례 05 | 내부 업무용으로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의무 적용 대상인가?   | 제31조    |                      |
| 사례 06 | 이미지 생성 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메타데이터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가?  | 제31조    | 유형2.<br>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
| 사례 07 | 인공지능 챗봇·보이스봇 서비스에서 사전고지와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 제31조    |                      |
| 사례 08 |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게시할 때 표시 방법은?                                     | 제31조    |                      |
| 사례 09 | 인공지능이 만들고 사람이 수정한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 제31조    |                      |
| 사례 10 | 멀티 LLM 환경에서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 제31조    |                      |
| 사례 11 | 광고영상·SNS 콘텐츠·인쇄물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은?   | 제31조    | 유형3.<br>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
| 사례 12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제31조    |                      |
| 사례 13 | 법 시행 전 제작하여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 되는가?   | 제31조    |                      |
| 사례 14 |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제33조    |                      |
| 사례 15 | 대출·신용 심사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 제33조    |                      |
| 사례 16 | 의료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제33조    | 유형4.<br>운영 의무 및 집행   |
| 사례 17 | 교육 인공지능서비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 제33조    |                      |
| 사례 18 |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홍수예보·지능형 CCTV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제33조    |                      |
| 사례 19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기록·사후 검증 관리체계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제34조    | 유형4.<br>운영 의무 및 집행   |
| 사례 20 | 법 시행 이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은?   | -       |                      |

## [부록1] 실무 판단 기준

부록1은 제3장에서 소개한 각 사례의 판단 기준·체크리스트·경계 사례를 패턴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문 제3장이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 중심의 간결한 Q&A로 구성한 것이라면, 이하 부록1은 법무·준법·기획·개발 등 실무자 판단 참고 자료입니다. 사례 20건에 대해 판단 요소, 체크리스트, 경계사례, 근거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록1의 사례 번호는 본문 사례 번호와 동일하며, 제3장에서 제시한 유형 구분 체계에 따라 동일한 유형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각 사례별로 ①사실관계 요약, ②질문 요지, ③쟁점 정리, ④판단 기준, ⑤답변 요지, ⑥실무 체크리스트(Yes/No), ⑦경계사례, ⑧근거 조항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활용 권장 방법

- 1단계: 제3장에서 해당 유형의 Q&A를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합니다.
- 2단계: 부록에서 동일 사례 번호를 찾아 ④판단 기준으로 자사 상황에 직접 대입합니다.
- 3단계: ⑥실무 체크리스트를 자가 점검 도구로 활용합니다.
- 4단계: ⑦경계 사례에서 자사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5단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구체적 상황을 기술하여 문의합니다.

### 유의 사항

이 문서의 판단 기준과 체크리스트는 일반적 패턴을 정리한 참고 자료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 법적 판단은 반드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01 책임 주체 및 적용 대상

**사례 1** 타사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제2·4·5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① 사실관계 요약

- A사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운영
- ChatGPT·Gemini 등 외부 인공지능 툴을 사용하여 텍스트·이미지·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뒤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

## ② 질문 요지

위 행위만으로 A사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이용자 vs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경계 | 이용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제공 대상             | 타사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사의 생성물을 제작하고 게시하는지       |
| 이용자 직접 상호작용 제공 여부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직접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응답을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
| 직접 개발·제공 여부       |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지           |

## ⑤ 답변 요지

현재 행위(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도구로 사용하여 생성물을 제작·게시)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이용자에 해당하여 법 제31조 투명성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A사가 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서비스(예: 챗봇·요약 생성 기능)를 제공하면 해당 기능 범위에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A사가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도구로 사용하여 생성물을 제작·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서비스 자체는 제공하지 않는가? | → 이용자       | → 아래 항목 확인 |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프롬프트 입력·응답 반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
|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가?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

## ⑦ 경계 사례

백과사전 페이지 하단에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기' 기능을 붙여 이용자가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설명문을 생성·답변하는 구조라면, 그 기능 범위에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평가될 여지가 큼니다. 해당기능 범위에서 사전고지 및 표시 등 투명성 이행 설계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2조·제4조·제5조(용어 및 적용 범위)

### 사례 02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B기관은 공공기관
- 외부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및 시민 안내 영상을 제작

#### ② 질문 요지

공공기관도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지, 단순 이용자로 볼 수 있는지?

외부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의무 대상  | 기관 성격에 따라 의무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지?            |
| 제작물 기준 | 내부 교육 또는 시민 안내물 제작에서 투명성 의무가 직접 발생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사업자성  | 공공·민간 구분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성'이 있는지 |
| 목적 구분 | 내부 목적의 제작 행위인지, 대외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인지      |

#### ⑤ 답변 요지

공공기관도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산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하여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대외 제공하거나, 시민이 기관 서비스 내에서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도록 제공할 때는 사업자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시민(외부 이용자)이 기관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에 직접 입력하고 응답을 받는 구조인가?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해당<br>가능성 높음 | → 이용자 해당 가능성<br>높음 |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시민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가?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해당<br>가능성 높음 |                    |
| 인공지능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입하여 내부 업무에만 사용하는가? (시민에게 직접 제공 없음) | → 이용자에 해당                |                    |

## ⑦ 경계 사례

민원 상담을 위해 시민이 접속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챗봇 서비스는 전형적인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서비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최초 접속 화면 또는 대화 시작 시점에서 인공지능 운용 사실의 사전고지 방식(문구·음성 안내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법 제2조 등(의무 주체 판단을 위한 용어 체계)

**사례 03** 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제2·4·5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① 사실관계 요약

- C사는 외부 개발사에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을 위탁
- 외부 개발사가 C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고 납품
- C사는 납품받은 인공지능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 ② 질문 요지

C사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외주 개발 납품 구조  | '외주 개발 납품' 구조에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구분 기준 |
| 설계 통제 중대한 변경 | 발주자가 설계 통제 또는 중대한 변경을 한 경우 지위가 달라지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설계 통제  | 모델 구조·핵심 알고리즘·학습 방식·성능 목표를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했는지 |
| 개발 관여  | 발주자가 개발 전반을 지휘하거나 핵심 모듈을 직접 개발했는지            |
| 중대한 변경 | 납품 후 기능·용도·성능이 현저히 달라질 정도의 변경을 가했는지          |
| 제공 주체  |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

### ⑤ 답변 요지

외부 개발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C사가 이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C사는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C사가 단순한 요구 사양 제시 이상으로 개발에 중대하게 관여하거나 납품 후 중대한 기능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기능 변경'이란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준으로 성능, 안전성(위험성), 용도(목적), 이용 분야와 맥락, 신뢰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C사가 모델 구조·학습 방식·학습용데이터 구성의 핵심 결정을 주도했는가?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성격 강화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 납품 후 C사가 모델을 재학습시키거나 핵심 모듈을 교체했는가?        | → 중대한 변경 검토 필요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유지        |
| 고객에게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운영(배포·장애 대응)하는 주체가 C사인가?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 개발사와 제공 주체 역할 분담 확인 |
| 개발사와 C사 사이에 제34조 책무 이행 주체가 계약상 정리되어 있는가?  | → 적절한 책임 배분       | → 계약 보완 권장            |

### ⑦ 경계 사례

C사가 외부 개발사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모델 아키텍처 선택·학습용데이

터 구성 방침·핵심 성능 목표를 C사 내부 회의에서 결정하고 개발사는 이를 구현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면, 형식상 외주 계약이더라도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주자와 수탁자의 역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후 분쟁이나 규제 조사 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요구사항 정의서(기능 목표만 기재했는지, 알고리즘 구조까지 지정했는지), ②개발 과정의 의사결정 회의록(누가 핵심 판단을 내렸는지), ③납품 후 변경 이력(C사 주도로 이루어진 변경인지, 개발사 주도인지)을 문서화해 두면 향후 사업자 지위 판단 시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⑧ 근거 조항

법 제2조·제4조·제5조(용어 및 적용 범위),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사례 04** 개인 창작자(유튜버, 인스타그램머 등)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① 사실관계 요약

- 개인 연구자·창작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상·이미지를 제작
- 유튜브·SNS 등에 업로드

② 질문 요지

개인이나 유튜버·SNS 운영자도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이용자의 의무 여부             | 개인 창작자에겐 어떤 의무가 있는지                       |
| 수익으로 발생시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 | 개인 창작자가 수익이 있다면 '인공지능사업자' 인지 '이용자'로 분류되는지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사업자성 충족 여부 | 영리·비영리 불문,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복적·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자에 해당 |
| 플랫폼 활용 형태  | 개인이 플랫폼의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 활동에 해당                  |

### ⑤ 답변 요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인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연구자·창작자·유튜버·인스타그램어는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표시는 창작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⑥ 실무 체크 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가?      | → 이용자 분류       | → 이용자 분류   |
|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는가? | → 이용사업자 해당 가능  | → 이용자 유지   |
| 플랫폼(인스타그램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레이블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가?    | → 자율 투명성 이행 권장 | → 법적 의무 없음 |

### ⑦ 사례

개인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유상 판매(예: 크리에이터 구독·광고 수익 등)하는 수준을 넘어,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이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타인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예: 개인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사례 05** 내부 업무용으로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D사는 외부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내부 직원 업무용으로만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이용

## ② 질문 요지

내부 업무 전용 인공지능에 법 제31조(투명성)가 적용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투명성 의무 적용 범위     |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시 의무 | 내부 전용 인공지능이라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외부 제공 여부       | 시행령에 따라 내부 업무 전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표시 의무 예외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 활용 영역이 채용·대출심사·의료 등 고영향 인공지능 분야인지 별도 판단 |

## ⑤ 답변 요지

내부 업무 전용으로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고지 또는 표시 의무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내부용이라도 제34조의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기록 보관·설명 가능성 확보 등)는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을 내부 임직원만 사용하고 외부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가?  | → 투명성 의무 예외 적용    | → 외부 서비스면 의무 발생 |
| 활용 영역이 채용·대출심사·의료·교육평가 등 고영향 인공지능 분야인가?     | → 법 제34조 책무 적용 검토 | → 책무 적용 제외 가능   |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사전 검토를 완료했는가? | → 문서화 완료          | → 확인 필요         |

## ⑦ 경계 사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해당 인공지능이 채용·인사 결정(직원 대상) 또는 대출·신용심사 결정(고객 대상) 등 사람의 권리·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직접 활용된다면, 법 제2조 제4호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확인되면 내부 업무 전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가 적용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적용 예외),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유형 02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사례 06** 이미지 생성 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메타데이터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가시적 표시(워터마크)와 비가시적 표시(메타데이터) 중 선택 또는 병용 필요성 검토 중

### ② 질문 요지

두 가지 표시 방법을 반드시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만으로 의무 이행을 가능한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법정 표시 방식  | 법령이 가시적·비가시적 동시 적용을 요구하는지                                    |
| 제공 형태별 차이 | 서비스 환경(UI) 내에서만 제공하는 경우와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이 있는 경우 표시 방식이 달라지는지 |
| 예외 상황     | 감상을 저해하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 비가시적 방법으로 충분한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식별 가능성     |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
| 방법 선택      | 가시적·비가시적 방법은 선택 또는 병용 모두 허용         |
| 예술적·창의적 예외 | 감상·향유를 저해하는 경우 비가시적 방법으로 대체 가능      |

### ⑤ 답변 요지

표시 방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환경(UI, 앱 화면 등) 내

에서만 생성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면 내 로고·문구 표시 등으로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개별 이미지마다 워터마크를 반복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성물(파일) 자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비가시적 방법(메타데이터 삽입 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 또는 음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시적·비가시적 방법 중 선택 또는 병용이 모두 허용되며, 법정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워터마크·자막·메타데이터·이용약관 명시·화면 안내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가? | → 의무 이행 인정 가능                      | → 표시 방법 추가 필요       |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      | → 식별 가능성 충족                        | → 표시 방식 보완 필요       |
| 다운로드·공유 등 생성물의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하는가?                | → 생성물(파일) 자체에 표시 포함 필요             | → 서비스 화면 내 표시만으로 충분 |
| 비가시적 표시 방법(메타데이터 등)만 단독으로 사용하는가?               | →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 안내 문구·음성 제공 필요 | -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진을 의학적 증거·법적 증거로 제출하거나, 딥페이크 생성물처럼 사람의 동일성을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시적 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2항·제3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2항(표시 방법)

**사례 07** 인공지능 챗봇·보이스봇 서비스에서 사전고지와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
- 음성 기반 보이스봇(ARS) 도입 예정

## ② 질문 요지

챗봇·보이스봇 각각에서 법 제31조의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사전고지 시점·방법 | 서비스 이용 전·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
| 보이스봇 특수성   | 음성 채널에서 사전고지 및 생성물 표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
| 생성물 표시 의무  | 챗봇·보이스봇 응답에 대해 생성물 표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외부 반출 시 방식이 달라지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서비스 시작 전 고지 |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 인공지능 운용 사실을 고지 |
| 매체별 고지 방법   | 텍스트채널: 화면 문구    음성채널: 음성 안내            |
| 복수 채널 병행    | 이용약관·앱 화면 등을 병행하면 이행의 충실도 제고           |

## ⑤ 답변 요지

사전고지는 챗봇의 경우 첫 대화 화면 문구로, 보이스봇의 경우 연결 초기 음성 안내로 이행합니다. 이용약관 명시·앱 정보 화면 표시 등을 병행하면 이행의 충실도가 높아집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 인공지능 기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매번 반복 고지는 불필요하며, 상담원 연결 후에는 별도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UI) 내에서만 응답이 제공되는 경우 화면 내 로고·문구 표출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외부 반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성물 자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명·화면 문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이용자에게 명백한 경우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1호), 서비스명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서비스 첫 화면(챗봇) 또는 연결 초기(보이스봇)에 인공지능 운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가? | → 사전고지 이행  | → 고지 설계 필요    |
|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 → 병행 이행 완료 | → 추가 기재 권장    |
| 사람 상담원 연결 시점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가?                  | → 혼선 방지 충분 | → 전환 안내 보완 필요 |

### ⑦ 경계 사례

챗봇이 일부는 인공지능, 일부는 사람이 응답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라면, 인공지능 응답 구간과 사람 응답 구간을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1항(사전고지 의무), 법 제31조 제2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고지·표시 방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1호(명백성 예외)

**사례 08**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게시할 때 표시 방법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통신판매업 운영 온라인 커머스몰
-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라이선스 구매)를 이용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의 이미지·텍스트 생성

#### ② 질문 요지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이용자 해당 여부 | 타사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커머스 기업의 지위               |
| 표시 방법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페이지에서 허용되는 표시 방법 및 위치·크기 기준 유무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여부 | 타사가 제공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 이용자 → 표시 의무 없음 |

#### ⑤ 답변 요지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세페이지 이미지·텍스트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31조상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을 표시 하더라도, 법령상 워터마크의 위치·크기·문구에 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든 뒤 자사 쇼핑몰에 게시하는가?          | → 이용자 분류 표시 의무 없음 | → 자체 인공지능서비스 여부 확인 |
|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에 실존 인물이나 허구의 인물 모델이 포함되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가? | → 타법 저촉 여부 확인 필요  | → 일반 상품 이미지로 처리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서비스를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라도, 향후 소비자에게 직접 인공지능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예: 소비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상품 이미지를 생성)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면, 그 기능 범위에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의무가 발생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법 제2조 제7·8호(인공지능사업자·이용자 정의)

**사례 09** 인공지능이 만들고 사람이 수정한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타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청첩장 등에 단순 삽입
-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에 사람이 리터칭(추가 편집) 추가

### ② 질문 요지

인공지능 생성물에 사람이 수정한 혼합 콘텐츠에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혼합 콘텐츠 기준     | 인공지능 생성물에 사람이 수정·리터칭을 가한 경우 표시 의무 발생 여부                 |
| 이용자 vs 사업자 구분 | 리터칭을 이용자 본인이 수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리터칭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의무 차이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제공 주체 확인  | 이용자가 자신의 편집 도구로 직접 리터칭했는지<br>사업자가 리터칭 기능을 서비스로 타인에게 제공하였는지 |
| 단순 후처리 예외 | 원본 창작물을 인공지능으로 단순 후처리(색보정·노이즈 제거 등)한 경우 개별 판단              |
| 이용자 지위 우선 | 이용사업자인 경우에만 표시 의무 발생                                       |

#### ⑤ 답변 요지

타사가 제공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청첩장 등에 단순히 삽입하는 방식(다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없음)이라면 이용자에 대하여 표시 의무 책임이 없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 내 기능의 일부로 리터칭(추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최종 인공지능 생성물을 출력하는 구조라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리터칭 기능을 자동화하여 타인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능의 제공 구조가 변경될 경우 의무 발생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이용자 본인이 생성물을 단순 편집·수정하는 것인가? (서비스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 → 표시 의무 없음 | → 서비스 제공 구조 확인 필요 |
| 이미지의 배경·인물 등 주요 시각 요소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 표시 의무 적용 | → 표시 의무 없음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이 배경만 생성한 이미지라도 소비자가 실제 촬영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표시의무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보호법상 기만 행위 등 다른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2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2항(표시 방법)

**사례 10** 멀티 LLM 환경에서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① 사실관계 요약

- 이용자가 GPT-4·Gemini 등 여러 LLM 중 선택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생성하는 서비스 운영

② 질문 요지

인공지능 생성물 하단에 구체적인 모델명(예: GPT-4o)을 명시해야 하는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충분한지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표시 내용의 구체성 | 법령이 모델명·버전까지 표시를 요구하는지      |
| 이용자 선택권    | 멀티 LLM 환경에서 선택한 모델 공개가 의무인지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법적 최소 요건 |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 모델명까지 요구하지 않음 |
| 자율 투명성   | 모델명 제공은 이용자 신뢰·선택권 측면에서 권장               |
| 식별 가능성   |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충족       |

⑤ 답변 요지

현행 법령에서는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의 구체적 모델명까지 기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또는 '인공지능 생성물' 등의 포괄적 표현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신뢰 확보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모델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문구·로고·워터마크 등)가 있는가? | → 의무 없음 | → 표시 추가 필요 |
| 이용자가 사용한 LLM 모델을 알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가?       | → 의무 없음 |            |

### ⑦ 경계 사례

B2B 서비스에서 기업 고객과의 계약상 사용 모델명을 기밀로 관리하는 경우라도, 최종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모델명 비공개와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 표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2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2항(표시 방법)

**사례 11** 광고영상·SNS 콘텐츠·인쇄물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화장품·음료 등 제품 SNS 광고 이미지, 홍보 영상, 인쇄 간행물에 인공지능 생성물 이미지 활용
- 모든 이미지·장면마다 개별 표시해야 하는지, 게시글 텍스트·별도 안내문으로 일괄 표시 가능한지 검토 중

#### ② 질문 요지

표시 의무 여부 및 의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표시 방법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이용자 vs 이용사업자      | 광고 콘텐츠 제작에 타사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의 법적 지위                      |
| 표시 방법 (이용사업자인 경우)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이미지·인쇄물 등 매체별 허용 표시 방법 및 개별 표시 여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지위 우선 확인  |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지       |
| 표시 방법 유연성 | (이용사업자인 경우) 워터마크·자막·게시글 텍스트 등 다양한 방법 허용 |
| 영상 표시 시간  | (이용사업자인 경우) 초반 또는 후반 일정 구간 표시도 인정       |

### ⑤ 답변 요지

해당 기업이 인공지능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인 경우 법적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 경우 워터마크·자막 형태(이미지·영상 내)나 게시물 설명 텍스트에 ‘인공지능 생성물 포함’ 표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표준 문구·시간·규정 크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광고 콘텐츠 제작에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가?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가?)       | → 이용자, 표시 의무 없음, 이하 항목 불필요 | → 이용자 해당 가능, 아래 항목 확인 |
| (이용사업자인 경우) 영상물의 초반 또는 후반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가? | → 영상 표시 의무 이행              | → 표시 구간 확인 필요         |
| (이용사업자인 경우) 이미지·인쇄물의 경우 워터마크·게시글 텍스트·별도 안내문 등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가?      | → 표시 의무 이행                 | 표시 구간 확인 필요           |

### ⑦ 경계 사례

자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타사에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여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2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2항(표시 방법)

**사례 12**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전시·공연·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생성 예술 작품
- 가시적 워터마크가 감상 경험을 실질적으로 저해

#### ② 질문 요지

가시적 표시가 필수인지, 비가시적 방법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예술 표현 자유 vs 투명성    | 표현의 자유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균형                               |
| 대체 표시 방법의 종류       |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자막 등)와 비가시적 표시(메타데이터 등) 중 어떤 방법이 허용되는지 |
| 비가시적 방법 단독 사용 시 조건 | 비가시적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 안내 의무가 발생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감상 저해 인정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가시적 표시가 전시·향유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
| 대체 수단 허용   |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자막 등) 또는 비가시적 표시(메타데이터 삽입 등)로 대체 가능. 단, 비가시적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을 별도 제공해야 함 |
| 이용자 접근 가능성 |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 제공  |

### ⑤ 답변 요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가시적 워터마크가 전시·향유를 저해하는 경우 두 가지 대체 방법이 허용됩니다. ①생성물의 주요 콘텐츠와 겹치지 않는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 자막 등), ②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표시 방법(메타데이터 삽입 등). 단, 비가시적 방법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 또는 음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작품 자체에 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감상 경험이 실질적으로 저해되는가?                  | → 별도 영역 표시(엔딩크레딧·자막 등) 또는 비가시적 방법 대체 허용 | → 가시적 표시 적용 권장         |
| 비가시적 표시 방법(메타데이터 삽입 등)을 적용했는가?                             | → 아래 항목 확인                              | → 별도 영역 표시 방법 적용 여부 확인 |
| 비가시적 방법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 안내 문구·음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 → 비가시적 표시 요건 충족                         | → 별도 안내 수단 추가 필요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 생성 예술 작품이 경쟁에 출품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외에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저작물 취급 기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 제2항(표시 의무), 시행령 제23조 제2항(표시 방법)

**사례 13** 법 시행 전 제작하여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가?  
(제31조 투명성 확보)

### ① 사실관계 요약

- 법 시행(2026.1.22.) 이전에 인공지능으로 제작하여 SNS·유튜브에 게시한 콘텐츠 보유
-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 삽입 또는 삭제·재업로드 필요 여부 검토

### ② 질문 요지

기존 게시 인공지능 생성물에 소급하여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소급 적용 원칙  | 법 시행 이전 생성·게시된 콘텐츠에 시행 후 표시 의무가 미치는지 |
| 기존 게시물 처리 | 삭제·재업로드 없이 기존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생성 시점 기준     | 표시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생성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적용                          |
| 게시 유지        | 시행 이전 생성·게시된 콘텐츠는 소급 표시 대상이 아님                               |
| 재생성·재제공 시 의무 | 동일·유사 콘텐츠라도 법 시행 이후 새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시점부터 의무 발생. 단순 게시 유지는 해당 없음 |

### ⑤ 답변 요지

인공지능기본법은 법 시행 이후 생성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생성·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삭제·재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 시행 이후 동일·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생성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문제의 콘텐츠를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제작하여 게시하였는가       | → 소급 표시 의무 없음     | → 법 시행 이후 생성분은 의무 적용 |
| 법 시행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생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 | → 새 생성·제공분은 의무 적용 | → 기존 게시물 유지는 소급 불필요  |

## ⑦ 경계 사례

법 시행 전에 광고 및 심의를 완료한 영상에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소급하여 책임을 묻진 않으나, 법 시행 이후 제작하고 송출하는 광고 콘텐츠에 대해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시행 전 생성물을 법 시행 이후 대폭 수정·재편집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새로운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수정·재편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 유형 0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사례 14**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① 사실관계 요약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요약·키워드 추출·주제 분석 제공
- 인공지능이 문장 완성도·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공 (평가·선별 정보 미제공)
- 최종 평가는 면접위원이 직접 수행

### ② 질문 요지

-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고 평가·선별은 사람이 하는 구조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사 채용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영역 |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기본법에 규정된 채용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
| 실질적 인간 개입      | 인공지능 결과물이 참고자료로만 쓰이고 사람이 평가하면 고영향에서 제외되는지             |
| 사업자 지위         | 타사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사 채용 업무에만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법정 영역 해당         | 채용 분야는 고영향 인공지능 가능 영역              |
|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직접 관여 | 인공지능이 채용 합격·탈락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권고하는지. |
| 사람의 실질적 개입       | 평가·선별 자체를 사람이 수행하는지,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지  |
| 사업자 지위           |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도입 후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

### ⑤ 답변 요지

채용 분야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 영역이나, 인공지능이 '기초 자료 작성(요약·추출·분류)'에만 활용되고 평가 자체는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경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더라도 평가 자체를 사람이 수행하면 동일합니다. 한편,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사 채용 업무에만 활용하고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이 지원자 합격·탈락 여부를 직접 산출하거나 권고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높음 | → 기초 자료 보조만이면 제외 가능  |
|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평가 점수나 등급에 수치로 반영되는가?     | → 사례별 세부 검토 필요       | → 참고자료로만 사용 시 제외 가능  |
| 최종 합격·불합격 결정을 면접위원 등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낮음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높음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이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를 수행하여 일정 점수 이하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하는 구조라면,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이 직접 채용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 채용 업무에만 사용하던 인공지능서비스를 계열사·협력사 등 외부 기관의 채용에도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 범위에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사례 15** 대출·신용 심사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① 사실관계 요약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가 인공지능 모델 결과값을 참고자료로 활용
- 최종 대출 승인 여부는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

#### ② 질문 요지

인공지능 신용평가 결과를 단순 참고하고 사람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단순 참고 구조 | 인공지능 결과가 최종 결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으면 고영향에서 제외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의사결정 직접성 | 인공지능 결과가 대출 승인·거절 조건 결정에 직접 활용되는지          |
| 인간 검토·승인 | 담당자의 실질적 검토·조정·승인이 이루어지는지,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는지 |

#### ⑤ 답변 요지

대출 심사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결과값을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정(승인 여부·대출 조건)을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 승인 여부 또는 조건에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있음 | → 단순 참고면 제외 가능       |
| 담당자가 인공지능 결과 외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가?     | → 인간 개입의 실질성 인정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있음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이 '단순 참고'라는 명목으로 활용되더라도, 담당자가 인공지능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통계적으로 극히 드물다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일정 점수 이하이면 자동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구조는 사람의 실질적 검토·승인이 없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대출 심사 분야)

**사례 16** 의료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① 사실관계 요약

- 진단용 초음파 의료기기에 인공지능기술 탑재
- 인공지능이 병변을 탐지·분석하여 의사에게 결과 제공

### ② 질문 요지

의료기기 탑재 인공지능 진단 기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의료 분야 적용 범위 | 의료기기의 인공지능기술이 법정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하는지 |

|          |                                     |
|----------|-------------------------------------|
| 의사 개입    | 의사의 독립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영향에서 제외되는지 |
| 관련 법령 교차 | 의료기기법과의 관계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법정 영역 해당             | 의료 분야(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의료기기 개발·이용)는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가능 영역                                 |
| 인공지능의 진단·치료 결정 직접 관여 |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진단·처방·치료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에 그치는지                         |
| 사람의 실질적 개입 통제        | 최종 임상 판단을 의료진이 수행하고 오류 시 의료진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인지                                     |
| 관련 법령 교차             | 의료기기 탑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기본법 외에 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보건의료 기본법상 규제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처 기준 병행 검토 필요 |

#### ⑤ 답변 요지

의료 분야는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가능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병변 탐지·분석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하고, 이 결과가 의사의 진단·치료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이 자동 진단이나 처방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예측값을 제공하여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데 그치며, 오류 시 의료진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인공지능 판단 결과가 의사의 진단서·처방·치료 계획에 직접 반영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있음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낮음 |
| 의사가 인공지능 결과 없이도 독립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오류 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인가? | →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가능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있음 |

#### ⑦ 경계 사례

인공지능이 단순 보조 도구로 도입되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인공지능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채택하고 독립적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기본법 외에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관련 법령과 중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관 부처 기준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의료 분야)

**사례 17** 교육 인공지능서비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① 사실관계 요약

■ 중·고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 콘텐츠 초안 생성·활동 기록 분석·교사·보호자 참고용 리포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

### ② 질문 요지

특수교육 학습 지원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교육 분야 고영향 기준 | 교육 분야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이 되는 구체적 조건      |
| 평가 vs 학습 지원  | '평가' 목적 인공지능만 고영향이고 학습 지원은 제외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법정 영역 해당 여부    |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분야에 활용되는 경우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가능         |
| 학습 지원 vs 평가 구분 | 학습 콘텐츠 생성·활동 기록 분석·리포트 작성은 '평가'가 아님 → 법정 영역 비해당 →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
| (참고) 사람의 개입 통제 | 법정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요소는 판단 불필요                                 |

### ⑤ 답변 요지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서비스는 학습 콘텐츠 초안 생성, 학습 활동 정리, 교사·보호자 참고용 리포트 작성 등 교육자료 생성과 교육과정 진행·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평가'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서비스가 유아 및 초·중·고교 교육기관의 학생 '성취도 평가'에 활용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 추가 검토 필요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낮음    |
| 인공지능이 학생의 성적·등급·합격 여부를 직접 산출하거나 그 결정에 활용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 있음       | → 학습 보조·콘텐츠 생성이면 고영향 제외 |

## ⑦ 경계 사례

평가 목적 외에 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향후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이용된다면, 그 기능 범위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⑧ 근거 조항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교육 분야)

**사례 18**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홍수예보·지능형 CCTV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① 사실관계 요약

- 인공지능이 10분마다 하천 수위를 자동 예측·위험 알람 생성
- 홍수예보관이 검증 후 홍수특보 발령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감시 시설 운영 검토

### ② 질문 요지

홍수예보 인공지능 및 지능형 CCTV가 각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법정 적용 영역       | 홍수예보가 법령상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영역(에너지·먹는 물 등)에 포함되는지                        |
| 지능형 CCTV 판단 기준 | 기기의 기능(단순 모니터링 vs 생체인식)이 기준인지, 아니면 기기가 활용되는 분야가 법정 영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인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법정 영역 해당 여부    |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영역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열거된 분야로 한정. 홍수예보는 에너지·먹는 물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영역 비해당 →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
| 지능형 CCTV 판단 기준 | 기기의 기능(생체인식 여부)이 아니라, 그 기기가 활용되는 분야가 법정 영역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에 활용되는 경우 고영향 해당 가능 |

#### ⑤ 답변 요지

고영향 인공지능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홍수예보 인공지능은 법정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너지·먹는 물 생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홍수예보 체계에만 활용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감시 기기의 경우, 단순 모니터링인지 생체인식인지의 기능 구분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기기가 활용되는 분야가 법정 영역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에 사용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해당 인공지능이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영역(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생체인식·범죄수사, 채용·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평가 등)에서 활용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단계 진입 | → 고영향 인공지능 가능성 낮음        |
| 지능형 CCTV의 경우,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목적으로 운영되는가?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    | → 단순 모니터링·관제이면 고영향 제외 가능 |

#### ⑦ 경계 사례

홍수예보 인공지능이 단순 홍수 수위 예측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기본법에 열거된 10개의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용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형 CCTV의 경우 도입 목적이 단순 관제에서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 활용으로 전환된다면, 그 시점부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법 제2조 제4호(고영향 인공지능 정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유형 04 운영 의무 및 집행

**사례 19**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기록·사후 검증 관리체계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34조 사업자 책무)

① 사실관계 요약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
- 기록 보관·설명 가능성·사후 검증 관리체계 구현 방법 검토

② 질문 요지

법 제34조에 따른 기록 보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후 검증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현하고 입증하는지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책무 이행 주체 분담 |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중 어느 쪽이 어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 기록의 무결성 입증  | 인공지능 판단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
| 홈페이지 개시     | 개시 위치·형식에 법적 기준이 있는지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태그 기준 분담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의 '개발·이용 태그'로 이행 주체를 구분하고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함 |
| 중복 면제    | 개발사업자가 이행한 책무는 이용사업자가 중복 이행 불필요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로그 무결성   | 입력·출력·근거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하고 변경 이력 관리   |

⑤ 답변 요지

법 제34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의 '개발·이용 태그'에 따라 이행 주체를 구분하고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책무는 이용사업자가 중복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 보관은 인공지능 판단 시점의 입력·출력·근거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로그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권장됩니다. 설명 가능성 확보는 인공지능 결정 이유를 이용자에게 설명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개별 인공지능시스템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책무 이행 주체가 계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 책임 배분 완료    | → 계약·SLA 보완 필요       |
| 인공지능 판단 로그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되고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가?                 | → 기록 보관 의무 이행 | → 로그 시스템 구축 필요       |
| 인공지능 결정 이유를 이용자·감독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 → 설명 가능성 충족   | → 설명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홈페이지 등 이용자 접근 가능 위치에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 사실과 책무 이행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가? | → 게시 의무 이행    | → 게시 페이지 구축 필요       |

### ⑦ 경계 사례

이용사업자가 개발사업자로부터 책무 이행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정보 제공 의무 조항을 삽입하거나, 직접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시행령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사례 20** 법 시행 이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은?

#### ① 사실관계 요약

- 법 시행 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를 시행 이후에도 지속 운영 중
- 기존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의무 소급 적용 여부, 유예기간 및 행정 제재 시점 검토

#### ② 질문 요지

법 시행 이후 도입 인공지능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유예기간 유무, 위반 시 제재 시점

### ③ 쟁점 정리

| 쟁점       | 내용                                  |
|----------|-------------------------------------|
| 시행 전 서비스 | 법 시행 전 이미 제공 중이던 인공지능서비스에 의무가 소급되는지 |
| 유예기간     | 공식적인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
| 제재 시점    | 위반 시 행정 제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④ 판단 기준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시행 후 적용  | 법 시행 전 제공 중이던 서비스라도 시행 이후 제공 구간부터 의무 발생   |
| 생성 시점 기준 | 시행 전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물은 소급 표시 의무 없음  |
| 유예기간     | 정부는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운영하겠다는 집행 방향을 밝힘. 다만 유예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는 존재 |

### ⑤ 답변 요지

법 시행 전부터 제공하던 인공지능서비스라도 법 시행 이후 제공되는 구간부터는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 전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소급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 시행 이후 이용자에게 새로 제공·배포되는 인공지능 생성물부터 표시 체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경과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⑥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Yes               | No                |
|---|-------------------|-------------------|
|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서비스가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 제공되고 있는가?  | → 시행 후 의무 적용      | → 서비스 미제공 시 의무 없음 |
|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물이 현재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가? | → 생성물 자체 소급 의무 없음 | → 신규 생성·제공은 의무 적용 |

### ⑦ 경계 사례

유예기간 중이라도 법적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여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경과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이라도 인명사고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⑧ 근거 조항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법 제40조 제3항(시정명령), 법 제43조(과태료)

## [부록2] 기타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대응 안내



인공지능기본법은 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록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법률과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피해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Q** 내 얼굴이 들어간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합성·변조되어 유포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A** 딥페이크 피해에는 인공지능기본법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됩니다. 아래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영상물 심의·삭제 요청 (국번없이 ☎1377)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형사 신고 (<https://ecrm.police.go.kr/>) 긴급 시 ☎112)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 상담·삭제 지원 (국번없이 ☎1366)
- Q** 인공지능이 저를 채용·대출에서 탈락시켰는데, 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까?
- A**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설명 가능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채용·대출 결정에 고영향 인공지능이 사용된 경우, 해당 기업에 결정 근거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에 개인의 설명 요구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이행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권리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없이 182)에 권리 행사 방법을 문의하거나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대출·신용 심사)에서는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권도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권의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내 개인정보나 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주요 대응 수단이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본인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열람 요청(제35조), ②수집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처리 정지 요청(제37조), ③불법 수집·이용된 경우 삭제 요청(제36조)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 국번없이 118)에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현재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의 직접적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마련한 채널을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 1800-5455)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했는데, 사전에 인공지능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A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43조). 다만 현재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있습니다. 의무 이행 여부가 의심되거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293)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인공지능이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생성·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A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보다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허위조작정보가 게시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처리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꺾쇄 표시 추가 제44조의 7)

### [부록3]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영역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 (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건강 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나. 질병의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다. 질병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라. 그 밖에 재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누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보타주
- 나. 전자적 침해행위
-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지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여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부록4]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전문 (2026.2. 기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시행일: 2026. 1. 24.]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 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1. 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2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 1. 20.>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0.>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 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1. 20.]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1. 20.>
  -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5.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2의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목개정 2026. 1. 20.]  
[시행일: 2026. 7. 21.]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창업의 활성화)

-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제도개선 등)

-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
-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에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촉진,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연구기관
  - 2. 인공지능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감독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4. 검·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초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40조(사실조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21311호, 2026. 1. 20.>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제8호, 제1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운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
  -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산업통상부
  10. 보건복지부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고용노동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획예산처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 3.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공동 연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대한 기여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제도적·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약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 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해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실행을 위한 기기·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위치할 것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5.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인사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
-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

으로 본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6개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국공립대학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

-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말한다)
  2. 회원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 검·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검·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 검·인증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검·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 검·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 검·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 검·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 관련 기술·윤리·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장 보칙

###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현황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제31조(업무의 위탁)

-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4.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부칙 (제36053호, 2026.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안내

전화 상담 080-850-2546

평일 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상담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주관 및 운영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기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

본 사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